사회복지법인 불국토
제221차 이사회 회의록

1. 일　　시 :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5시

2. 장　　소 : 도림사(동래구 명륜동 37)

3. 참 석 자 : 범 (이 융), 정 (이 문), 종 (유 수), 하 (지 옥), 정 (김 순), 법 (이 훈), 박 하 장 두 장 열 이사

4. 회의내용 : 의장은 이사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다.

▶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

- 범 (이 융) 대표이사가 2019년 22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, 의장(이하 "의장)이 되어 인사말씀을 하다.

▶ 전차회의록 보고

- 의장이 전차회의록을 보고하니, 원안대로 받기를 정 (이 문)이사의 동의 및 종 (유 수)이사의 재청 등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전차회의록 보고를 처리하다.

▶ 부의안건

제1호 의안　2019년 법인 및 산하기관 3차 추가경정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 심의·의결의 건

제2호 의안　법인 산하기관 운영규칙 개정(안) 심의·의결의 건

제3호 의안　수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탁신청 심의·의결의 건

▶ 의결안건

제 1호 의안　2019년 법인 및 산하기관 3차 추가경정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 심의·의결의 건

의장은 정관 제26조(의결사항),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절(추가경정예산),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6조(추가경정예산)에 따른 법인 및 산하기관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, 첨부자료를 참고로 면밀히 검토하다.

이에 법 (이 훈)이사의 동의와 박 하이사의 재청 등 참석 이사들의 만장

일치로 법인 및 산하기관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.

2019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3차 추가경정예산(안) 총괄표

(단위: 원)

구 분		2019년 전차 추경예산(A)	2019년 추경예산(B)	증감(B-A)	보조금	법인전입금
총 계		19,500,132,429	19,976,651,438	476,519,009	12,172,809,916	162,000,000
사회복지법인 불국토	-	245,684,847	253,171,454	7,486,607	0	0
개금종합 사회복지관	소 계	2,436,500,000	2,572,000,000	135,500,000	1,782,253,000	32,000,000
	복지관	1,460,000,000	1,470,000,000	10,000,000	818,612,000	30,000,000
	장애아동 재활치료	72,500,000	72,500,000	0	0	0
	노인사회활동 지원	538,000,000	660,000,000	122,000,000	658,024,000	0
	지역아동센터	101,500,000	103,000,000	1,500,000	94,124,000	0
	장애인주간	126,500,000	126,500,000	0	93,000,000	0
	재가노인	138,000,000	140,000,000	2,000,000	118,493,000	2,000,000
수영구노인복지관	노인복지관	2,650,000,000	2,680,500,000	30,500,000	2,381,346,060	30,000,000
	노인복지센터	133,670,000	128,930,000	-4,740,000	0	0
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	서부노인	428,041,288	425,895,056	-2,146,232	363,632,000	5,000,000
	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	188,629,325	188,609,642	-19,683	185,412,000	0
양정재가 노인복지센터	노인주간	258,695,606	276,528,086	17,832,480	0	25,000,000
	복지과	735,863,198	868,117,598	132,254,400	826,840,400	0
상락정배산실버빌	-	1,825,516,547	1,826,086,115	569,568	133,735,468	0
컴넷하우스	-	440,614,865	440,042,245	-572,620	345,673,060	0
수영구자원봉사센터	-	234,605,371	234,605,371	0	232,605,371	2,000,000
부산진시니어클럽	-	4,161,773,298	4,221,726,298	59,953,000	2,897,464,000	21,000,000
부민노인 복지관	-	1,271,752,814	1,385,341,000	113,588,186	1,164,073,000	15,000,000

구 분		2019년 전차 추경예산(A)	2019년 추경예산(B)	증감(B-A)	보조금	법인전입금
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	센터	402,489,679	400,962,543	-1,527,136	185,856,600	7,000,000
	장기요양	700,388,001	661,935,340	-38,452,661	0	0
동삼종합사회복지관	복지관	1,087,000,000	1,114,000,000	27,000,000	876,215,000	20,000,000
	장기요양기관	296,140,000	296,140,000	0	0	0
용당어린이집	-	864,000,000	864,000,000	0	325,058,991	5,000,000
영주암어린이집	-	537,992,290	537,992,290	0	219,923,566	0
보현어린이집	-	600,775,300	600,068,400	-706,900	252,721,400	0

- 별첨)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
- 2019년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및 부설센터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수영구노인복지관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수영노인복지센터 일반회계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상락정배산실버빌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컴넷하우스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수영구자원봉사센터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부산진시니어클럽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부민노인복지관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동삼종합사회복지관 3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- 2019년 보헌어린이집 2차 추가경정 예산(안) 및 사업조정계획(안)

제 2호 의안 법인 산하기관 운영규칙 개정(안) 심의·의결의 건

의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와, 3을 준용하여 부민노인복지관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함을 설명하고 첨부자료를 참고로 면밀히 검토하다.

이에 정 (이 문)이사의 동의와 박 하이사의 재청 등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부민노인복지관 운영규칙 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.

○부민노인복지관 운영규칙 개정내용

	변경 전	변경 후
3. 복무 규칙	제51조(산전·후 휴가 등)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직원은 ~~연간 1일 이내의 휴가~~를 청구할 있다.	제51조(산전·후 휴가 등)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직원은 연간 **3일 이내의 휴가(최초 1일은 유급)**를 청구할 있다. <일부개정>
	제50조(경조휴가) <별표3-2>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**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~~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~~하다.	제50조(경조휴가) <별표3-2>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**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**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** <일부개정>

제3호 의안 수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탁신청 심의·의결의 건

의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19-936호 수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과 관련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참석한 이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, 21조의 2(시설의 위탁)에 따라 수탁 절차를 진행해야 됨을 설명하고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을 구한 바 정 (이 문)이사의 동의와 정 (김 순)이사의 재청 등 참석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다.

○ 위탁사무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
○ 위탁사무 수행기관 : 수영구노인복지관(관장 : 이 호)
○ 위탁기간 : 2020년 1월 ~ 2020년 12월(1년)

▶ 폐회

- 의장이 다른 안건이나 건의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고,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2019년 221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마치다. 그 시간은 오후 5시 40분.

위 이사회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날인하다.

대표이사 범 (이 융) (인)

상임이사 정 (이 문) (인)

이 사 종 (유 수) (인)

이 사 하 (지 옥) (인)

이 사 정 (김 순) (인)

이 사 법 (이 훈) (인)

이 사 박 하 (인)

이 사 장 두 (인)

이 사 장 열 (인)

감 사 김 용 (인)

감 사 김 수 (인)